

# 대 구 지 방 법 원

## 제 1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4나12438  부당이득반환등  
원고, 항소인                이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피고, 피항소인            김OO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가소9252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4. 24.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8,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8,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8,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3. 14:20경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대출을 해주겠으니, 인지대 등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의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송금 직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나. 항과 같이 원고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계좌에는 1,208,98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1,600,000원을 송금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계좌에 1,208,980원이 남아 있으므로 계좌 잔액인 1,208,980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위 1. 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1,600,000원을 송금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계좌에 1,208,980원이 남아있다. 원고의 돈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1,600,000원 전부에 대한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성명불상자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위 계좌 잔액 1,208,98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08,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김수홍

                 판사      이정현